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[시행일: 2023. 12. 1.] 제2호마목

소방시설(제3조 관련)

- 1. 소화설비: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·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
 - 가. 소화기구
 - 1) 소화기
 - 2) 간이소화용구: 에어로졸식 소화용구, 투척용 소화용구,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
 - 3) 자동확산소화기
 - 나. 자동소화장치
 - 1)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
 - 2)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
 - 3)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
 - 4) 가스자동소화장치
 - 5) 분말자동소화장치
 - 6)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
 - 다. 옥내소화전설비[호스릴(hose reel)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]
 - 라. 스프링클러설비등
 - 1) 스프링클러설비
 - 2) 간이스프링클러설비(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)
 - 3)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
 - 마. 물분무등소화설비
 - 1) 물분무소화설비
 - 2) 미분무소화설비
 - 3) 포소화설비
 - 4) 이산화탄소소화설비
 - 5) 할론소화설비
 - 6)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(다른 원소와 화학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소화설비
 - 7) 분말소화설비
 - 8) 강화액소화설비
 - 9)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
 - 바. 옥외소화전설비
- 2. 경보설비: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·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

- 가. 단독경보형 감지기
- 나. 비상경보설비
 - 1) 비상벨설비
 - 2) 자동식사이렌설비
- 다. 자동화재탐지설비
- 라. 시각경보기
- 마. 화재알림설비
- 바. 비상방송설비
- 사. 자동화재속보설비
- 아. 통합감시시설
- 자. 누전경보기
- 차. 가스누설경보기
- 3. 피난구조설비: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
 - 가. 피난기구
 - 1) 피난사다리
 - 2) 구조대
 - 3) 완강기
 - 4) 간이완강기
 - 5)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
 - 나. 인명구조기구
 - 1) 방열복, 방화복(안전모,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)
 - 2) 공기호흡기
 - 3) 인공소생기
 - 다. 유도등
 - 1) 피난유도선
 - 2) 피난구유도등
 - 3) 통로유도등
 - 4) 객석유도등
 - 5) 유도표지
 - 라.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
- 4. 소화용수설비: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
 - 가. 상수도소화용수설비
 - 나. 소화수조 · 저수조,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

- 5. 소화활동설비: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
 - 가. 제연설비
 - 나. 연결송수관설비
 - 다. 연결살수설비
 - 라. 비상콘센트설비
 - 마. 무선통신보조설비
 - 바. 연소방지설비